

항 소 장

항 소 인(피고) 대한민국
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정길

피항소인(원고) 1. 서승연

2. 김지수

3. 강정환

4. 한영선

5. 정윤수



위 당사자간 서울지방법원 2000가단146549 손해배상(기)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2001. 3. 21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항소인(피고)은 동 판결 가운데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합니다.

I. 원 판결의 표시

1. 피고는 원고 서승연, 김지수에게 각 금 500,000원, 원고 강정환에게 금 200,000원, 원고 한영선, 정윤수에게 각 금 100,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00. 6. 15 부터 2001. 3. 21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.
2. 원고 서승연, 김지수, 강정환, 한영선, 정윤수의 나머지 각 청구 및 원고 유홍주, 홍미선, 이광섭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원고 서승연, 김지수, 강정환, 한영선, 정윤수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위 원고들의,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, 원고 유홍주, 홍미선, 이광섭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II. 피고가 위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날 : 2001. 4. 2

III. 불복의 정도 및 항소를 하는 취지의 진술

피고는 위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모두에 대하여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합니다.

IV. 항소취지

1. 원심판결 가운데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1, 2 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V. 항소이유

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.

VI. 첨부서류

1. 항소장 부분 5통
2. 송달료 납부서 1통



2001. 4. 10

항소인(피고) 대 한 민 국

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 정 길

소송수행인

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원 찬 회



서울지방법원 항소부 귀중